

일반공급 서류안내

일반공급 가점제

자격 검증 제출서류안내(일반공급 가점제)

- ※ 당첨자(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비서류 제출일 내 견본주택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당첨자(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아래 “공통서류”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함.

□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

구분	제출유형		구비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서류	○		일반공급 서약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, 일반공급 당첨자 서약서 작성	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	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제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(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시 본인만 접수 가능)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	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 제3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	
			-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직계존속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바람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
			-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			
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(1년 이상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전부 공개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		
○	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상세”로 발급 바람		
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) -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		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	
	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접수를 신청한 경우				
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	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(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
	○		무주택 소명서류	-	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	
	○			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	
	○			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		
	○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○		기타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제3차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제출	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	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	

- 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30.(목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(포함) 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 / 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-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)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- ※ 2005. 7.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일반(특별)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